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가. 제안이유

-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0명 → 8명 (안 제3조제1항)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제2항)
 - 운수 및 운송사업체 (조합,단체)관련자 위촉 제외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4항)
 -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그 동안 교통 불편사항 등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자인 운수사업체 등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저하 등 공정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협조 요청이 시달되어 위원회 심의 시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3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10명 ➡ 8명 (안 제3조제1항)

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제2항)

○ 운수 및 운송사업체 (조합,단체)관련자 위촉 제외

다.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4항)

○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라.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3.6.~2014.3.26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단체)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중 “직접적인”을 “직·간접적인”으로 하고,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를 “심의에”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단체)관련 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중에서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1. <u>버스운수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업체(조합, 지부)의 임·직원</u></p> <p>2. <u>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u></p> <p>제7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u>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u>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u>〈신 설〉</u></p> <p>제8조(효력) <u>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확인</u></p>	<p>제3조(구성) ① ----- ----- <u>8명</u> ----- -----.</p> <p>② ----- ----- <u>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 단체) 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u> ----- -----.</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7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직·간접적인</u> ----- ----- ----- <u>심의에</u> ----- -----.</p> <p>⑤ <u>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u></p> <p>제8조(심의결과 처리) <u>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u></p>

불가 처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 범위-----
-----.